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961호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4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47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4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소공고 제2021-669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6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03호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 8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2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고 1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3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4호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회 람									
--------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4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동구 창영동 13-31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배다리 공원	문화 공원	동구 창영동 13-31번지 일원	-	증)6,621	6,621	-	광로2-1호선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배다리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원 신설 -위치 : 동구 창영동 13-31번지 일원 -면적 : 6,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다리 현책방거리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 (50~70)	주간선 도로	3,540	15호광장	광3-2	일반 도로	1976. 3.27	-
변경	광로	2	1	50 (50~70)	주간선 도로	3,540	15호광장	광3-2	일반 도로	1976. 3.27	· 지하차도구간 (430m) · 송인지하차도 (유동삼거리 남측 ~송림로 북측) · 공원 중복결정 (6,62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광로2-1	광로2-1	· 표기사항 변경(지하차도 구간 및 중복결정 사항)	· 현재 미 개통된 송인지하차도[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3구간(유동삼거리~ 송림로)] 상부공간 공원 중복결정으로 인한 표기사항 변경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3,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정비과, 032-770-6212, 동구 금곡로 67)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47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2021년 제8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심의일시 : 2021. 8. 20.(화) 14:00
2. 심의장소 : 인천광역시청 중회의실
3. 심의작품
 - 총 15작품
4. 심의결과
 - 가결 5작품(조건부 2작품 포함), 부결 10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 첨부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연 번		설치지역	종류	작 품 명	이미지	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	부	
1	1	서구 원당동 483-5외	조각	공간 저 너머		○		[조건부 가결]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품의 재연출 요망.
2	2	미추홀구 송의동 362-19번지 일원	조각	도시인의 삶		○		인체표현이 어둡고 정적이며 인체해석방법이 어색함. 모방이나 이미지 중첩의 문제. 건축물(아파트)과의 부조화
	3		조각	행복나무(Happy tree)		○		나무형태의 조형물과 자전거 탄 인물들 간 소재, 형태등이 이질적이며 인물들은 다른 작가 작품과 유사함. 작가의 기존작업과의 연계성 부족
3	4	미추홀구 용현동 535-1번지 일원	조각	Wrapping-wind flow		○		
	5		조각	Lunar Garden		○		
	6		조각	너를 만나다		○		[조건부 가결] 안정성 제고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작품 재연출 요망
	7		조각	形(형)·積(적)-R elationship		○		
4	8	서구 청라동 6-2	조각	사랑으로 자라는 나무		○		주 구조물의 형식적·관념적 형태(나무줄기와 나뭇잎[구형] 부조화). 나무의 형태와 개·인물의 표현이 매우 이질적. 기존부결사유 보완 부족(작품가과다, 조형미 등)
5	9	부평구 청천동 179-11번지	조각	상승의 미래		○		작품의 조형적 요소와 공공미술로서의 독창성 부족. 표현력이 일차원적이며 주변환경과 부조화. 기존부결사유 보완 부족
6	10	남동구 간석동 95-3번지외	회화	영원-1		○		작품의 조형성과 설치위치는 적절하다고 인정됨. 그러나 작품수가 줄면서 가격이 과다책정된 부분의 조정 필요함
	11		회화	영원-2		○		
	12		회화	우리들의 이야기-1		○		
	13		회화	우리들의 이야기-2		○		
7	14	미추홀구 주안동 1542-7번지 외	회화	칠월칠석		○		설치위치 부적절(회화작품의 공개공지 설치), 가격과다. 작품의 형식미, 조형미, 독창성, 예술성 부족
8	15	미추홀구 용현동 139-6번지	회화	퇴근길-안개		○		기존 부결사유인 오피스텔 장소에 어울리는 작품 스타일로의 변경은 인정되나, 가격과다 (동일작가 2작품 가격 과다, 조정요함)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소공고 제2021-669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1. 8. 25. ~ 9. 8. (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계산동), ☎ 032-720-3722, 010-9704-0254)
7. 의견제출 기한 : 2021. 9. 8.(수) 18시까지

붙 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2021. 8. 24.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소장 [관인생략]

[붙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수용가 현황			체납기간 (월)	체납금액 (원)	압류대상자(소유자) 및 압류대상			비고
	고객번호	수용가명	수용가 주소			성명	주민등록등본상(법인등기부상) 주소	압류물건	
1	245 -030387	최#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0번길 4#-2, B동 102호(병방동, 원#골#타운)	'20.12. ~ '21. 6.	400,060	박#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0#, #0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0번길 4#-2, B동 102호(병방동, 원#골#타운)	등기 반송 (폐문 부재)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03호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용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안 제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4292, 팩스번호 032-440-8662, 전자메일 jjini083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6년 12월 31일</u>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비용 발생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2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생활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시립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에 있어 공공스포츠클럽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체육시설 사용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의 전용사용료를 개정함(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회,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advanced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소 :			
○성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붙임1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2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 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각급학교”를 “각급학교 또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연희크리켓경기장은 문학야구장 사용료 적용”을 “연희 크리켓경기장은 송도 LNG 야구장 사용료 적용”으로 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도원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800,000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야간	450,000	675,000	900,000	1,200,000					
도원체육관	주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야간	150,000	225,000	450,000	675,0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팅장	70,000	90,000	90,000	110,000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피겨 스케이팅장	50,000	70,000	70,000	90,000					
	하키장									
가좌 테니스장	주간	살내 (코트당)	20,000	30,000	40,000					
	2시간	실외 (코트당)	10,000	15,000	20,000		25,000			
인천월드컵 경기장(문학경기장)	육상장	100,000	150,000	300,000	450,000	* 축구(풋살장), 실내 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문학야구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200,000	300,000	500,000	750,000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보조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축구장	50,000	100,000	100,000	140,000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 구 장	주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보조 경기장	50,000	80,000	100,000	15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구 장	주경기장	60,000	90,000	120,000	180,000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보조 경기장	40,000	60,000	110,000	160,000				
		실내 연습장	70,000	100,000	140,000	210,000				
송도 LNG 야구장	야 구 장	40,000	60,000	80,000	120,0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 구 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사이클	200,000	200,000	300,000	300,000					
다목적운동장	구 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정구코트 (면 당)	20,000	30,000	25,000	40,000	35,000	60,000	45,000	70,000	
	하 키	60,000	90,000	9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24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송림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 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계양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운동장	주간 2시간	20,000	25,000	35,000	45,000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양궁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실내 체육관	주간/ 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강화고인돌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100,000 ~ 200,000 (65,000 ~ 130,000)	150,000 ~ 300,000 (100,000 ~ 200,000)	250,000 ~ 500,000 (150,000 ~ 300,000)	375,000 ~ 750,000 (200,000 ~ 400,000)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	BMX경기장	주간	100,000 ~ 200,000	150,000 ~ 300,000	250,000 ~ 500,000	375,000 ~ 750,000	
선학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선학하키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문학박태환수영장	경영풀	주간	600,000	900,000	1,200,000	1,800,000	
	연습풀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다이빙풀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열우물테니스 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서브코트	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실내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5,000	35,000	50,000	65,000	
	실외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15,000	20,000	25,000	35,000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열우물스쿼시 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3시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단복식 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 경 기 장	육상장	주간	130,000	195,000	300,000	450,000	* 연희크리켓경기장은 송도 LNG 야구장 사용료 적용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 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 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 적지 대금 별도 부담
		잔디 구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 조 경 기 장	육상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잔디 구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테니스장 (실외)	주간 2시 간	10,000 (코트당)	15,000 (코트당)	20,000 (코트당)	25,000 (코트당)		
선학국제빙상 경기장	빙상장	1일 1시간	90,000~ 100,000	117,000~ 130,000	500,000 (5,000,000)	650,000 (6,500,000)		
	컬링장 (면당)	1일 1시간	40,000~ 50,000	52,000~ 65,000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옥련국제사격장	10M 25M 50M	주간	30,000	40,000	40,000	50,000		
	10M 러닝타겟	주간	30,000	45,000	40,000	60,000		
	결선경기장	주간	60,000	90,000	70,000	105,000		
	족구장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인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장애인체육관	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축구장	1일 1시 간	10,000	15,000	20,000	30,000		
파크골프장	9홀	2시 간	50,000	80,000	100,000	160,000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	축구장	2시간	70,000	100,000	100,000	200,000		
	야구장	3시간	40,000	60,000	80,000	120,000		
	테니스장 (코트당)	2시간	10,000	15,000	20,000	25,000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

<p>관련 법령</p>	<p><input type="checkbox"/> 생활체육진흥법</p> <p>제2조(정의)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p> <p>“내용은 별지 작성”</p>
<p>관련 법규 정비 대상</p>	<p>“해당 사항 없음”</p>
<p>특이 사항</p>	<p>“없음”</p>

관련법령 발췌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전용사용료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연희크리켓경기장의 연 대관수입은 700~800만원 수준으로 전용 사용료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예상 비용은 그 이하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3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직 등 직원의 처우 개선과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처우 등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생략) <u><신설></u>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u>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예산)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자치경찰 사무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 복지 지원(안제14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 : 1,380천원
 - 지급대상 :14명

3. 미첨부 사유

- 복지포인트 지급사유 발생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자치경찰운영과장 김 석 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4호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회의장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 및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제4조)
-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소 :			
○성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를 “체결하고, 민간투자 유치,”로,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총괄·운영하는 민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보상사업”으로,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민간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조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정량화된 사회비용 절감효과 또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7조 중 “지급년도”를 “지급 회계연도”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시장은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p> <p>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p> <p>7.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체결하고, 민간투자 유치, ----- ----- 총괄·운영 하는 민간기관----- -----.</p> <p>6. ----- ----- 보상사업----- ----- 민간기 관-----.</p> <p>7. (현행과 같음)</p>
<p>제4조(적용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p> <p>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p> <p><신설></p>	<p>제4조(적용대상) ----- ----- ----- -----.</p> <p>1. <u>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u></p> <p>2. <u>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u></p>

<신 설>

2. (생 략)

제13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7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신 설>

제19조·제20조 (생 략)

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정량화된 사회비용 절감효과 또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4.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3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의회-----.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성과보상) -----

지급 회계연도 -----.

제19조(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시장은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21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p>□ 「지방자치법」</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p> <p>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p> <p>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및 제11조)
-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 선정 (안 제16조)
-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 (안 제1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상계약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어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